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9. 7 선고 2022가단203889 판결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1. C 주식회사

2. 주식회사 D

변 론 종 결 2022. 7. 20.

판 결 선 고 2022. 9. 7.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7. 1.부터 2022. 3.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D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천안시 E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8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2020. 11. 20. 원고와 위 공사 중 강마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200만 원, 공사기간 2020. 11. 20.부터 2020. 12.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20. 11. 20.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하도급대금은 피고 D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 D의 피고 C에 대한 대가지급채무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직접지급 합의(이하 ‘이 사건 직접지급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2021. 6. 30.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4,2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직접지급합의는 원고가 피고 C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피고 D이 책임을 진다는 연대보증의 의미이므로, 피고 C이 이 사건 직접지급합의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직접지급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은 피고 C이 아닌 피고 D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 합의한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제14조 제1항 제2호),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간주되는데(제14조 제2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이 한 이 사건 직접지급합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직접지급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4,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21. 7. 1.부터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2. 3.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상윤